「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은 AI 전후방산업의 급격한 전환에 대비하여 관내 기업 간 협력과제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내 공급망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중장기적인 제조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8조

2) 필요성: 협력과제 발굴, 컨설팅 제공, 과제 관리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업무 전반

1)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대상기업 선정

2) 과제 추진현황 수시 점검, 수행기업 결과 평가, 후속지원 연계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2.~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5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250	182	18	50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추진계획(기업지원과-4630)

아. 위탁구분: 신규

자. 부서의견: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회 동의 후 선정 심의 예정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해당없음(신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AI 산업 전환에 대응하여 관내 기업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공급망 가치사슬을 조성하기 위한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고정밀·고효율 부품의 양산 개발 및 디지털 전환 등 고도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기업지원 노하우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히 소·부·장 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양산 스프린트[1]'와 제조 역량 고도화를 위한 '양산 스케일업[2]'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사업 운영이 요구됨.

- 다만, 2027년 신규 사업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선정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제조 공급망 강화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

1) 글로벌 공급망 소부장 기술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양산개발 협력 지원(최대 100백만원/건)
2) 생산, 품질, 공정 등 제조 기술 및 역량 고도화 협력 지원(최대 70백만원/건)